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3701
----------	------

2026년 6월 2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26년 5월 26일
- 다. 회부일 : 2026년 5월 27일
- 라. 상정일 : 제336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6년 6월 16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평생교육국장 정진우)

가. 제안이유

-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시립청소년 시설 명칭·위치 등 변경사항을 현행화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법령 정합성 확보(안 제2조·제11조)
 - 1) 상위법령에는 청소년시설 위탁단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청소년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용대상 범위 확대
 - 2) '청소년시설 운영규정'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시설 사무편람' 체계로 통합·정비

○ 청소년시설의 명칭·위치 변경사항 현행화(별표 1 개정)

1) 성문화센터 및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통합 반영

2) 시립성북청소년센터 주소 현행화

(기존) 성북구 한천로 95길 → (변경) 성북구 한천로 660-9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2026. 4. 9. ~ 4. 29.)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김태한)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단체의 범위를 확대(청소년단체 → 청소년단체 등)하고, 시설 운영규정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시장의 시설 운영규정 제정 등 → 운영자의 시설 사무편람 제정 등)하며, 시립청소년시설(별표 1)의 명칭·위치·기능을 현행화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음.

※ 본 개정안의 내용

-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단체 범위 확대
 - (현행) 청소년단체 → (개정) 청소년단체 등 (안 제2조제2호)
- 시립청소년시설 운영규정 제정 등에 관한 사항 정비
 - (현행) 시장의 청소년시설 운영규정 제정 등 → (개정) 운영자의 청소년시설 사무편람 제정 등 (안 제11조)
- 시립청소년시설 명칭·위치·기능 등 현행화
 -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 현행화 (안 별표 1)

가. 청소년시설 운영 위탁단체 범위 확대 (안 제2조제2호)

- 안 제2조제2호는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단체의 범위를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단체 등'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 상위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 등에서 '청소년단체 외 전문기관 등'에도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전문성이 있는 단체에도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청소년시설의 운영”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시가 운영하거나 자치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u>청소년단체</u>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p> <p>3.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청소년단체 등</u> -----.</p> <p>3. 4. (현행과 같음)</p>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관련 사항, 성교육 전문기관에 두는 종사자 등 직원의 자격 및 설치 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의 위탁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운영하는 단체
 3.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성교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단체

○ 다만, “등”의 범위가 조례상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관련 전문성(위탁 가능 주체, 자격요건, 선정기준 해석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시설 유형별로 상위법령(「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위탁 가능한 대상을 청소년 단체로 한정)에 따른 위탁 가능한 주체를 구분하여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한편, 현행 조례 제10조제1항에서 청소년시설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청소년단체’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 취지에 맞게 ‘청소년단체 등’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전문위원실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u>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 ----- - <u>청소년단체 등</u> ----- ----- ----- -----
1. ~ 4. (생략) ② ~ ④ (생략)	1. ~ 4. (생략) ② ~ ④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나. 시립청소년시설 운영규정 제정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시립청소년시설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운영규정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시설 운영규정 제정 등 → 시설 사무편람 제정 등) 하려는 것으로,
 - 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은 조례 제11조에서 시장이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에 관한 기준을 정해 운영자에게 시설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은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 상위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시설 사무편람(수탁사무 처리부서·기간·기준·과정, 구비서류, 서식 등) 제정’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법령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u>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 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u></p> <p>② <u>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③ <u>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u></p>	<p>제11조(시설 사무편람의 제정 등) ① <u>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사무편람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② ----- 제1항 <u>에 따른 사무편람</u>----- -----</p>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026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57페이지)

- 취업규칙(인사·복무·보수 규정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규 일체, 명칭 무관)이 사무편람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다만, 현행 조례 제11조는 청소년시설의 운영규정(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 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기준을 정해 알리고, 그 기준에 따라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운영규정)을 정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부여하고, 그 기준('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기준 설정)에 따라 운영자에게 시설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 운영자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거나, 현행 조례를 개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상위법령 위반 등)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립청소년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존치의 필요성·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개정안(안 제11조)의 '시설 사무편람의 제정 등'에 관한 내용은 상위법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서울시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기규정된 사항으로 본 조례에 재규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여짐.

〈전문위원실 수정의견〉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p> <p>②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제11조(시설 사무편람의 제정 등) ①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사무편람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삭 제></p> <p>② ----- -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 ----- -----</p>	<p>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다. 시립청소년시설 명칭·위치·기능 등 현행화 (안 별표 1)

- 안 [별표 1]은 시립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현행화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4조)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를 [별표 1]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른 조치임.
- 구체적으로 동일 자치구 표 통합(3개소), 기능 정비(4개소), 위치 현행화(1개소), 시설 재분류(시립청소년드림센터, 3. 기타청소년시설 → 1. 청소년활동시설), 사무소 신설(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및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각 5개소 신설), 사무소 전환 센터 삭제(3개소) 등을 하려는 것임.

※ 현행화 내용

1. 청소년활동시설

현행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95길 7
	양천구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개정안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센터	"	용마산로 217
		시립망우청소년센터	"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 660-9
	양천구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신 설>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 <신 설>	남부순환로54길 37 <신 설>

2. 청소년복지시설

현행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가산디지털 1로 120
	"	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신림로 376
	"	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난곡로24가길 54

개정안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가산디지털 1로 120
		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신림로 376
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난곡로24가길 54	

3. 기타청소년시설

< 현 행 >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마포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영신로 200
양천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쉼터 포함)	남부순환로54길 37

< 개 정 안 >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마포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운영총괄	월드컵로 212
광진구 <신 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광진사무소 <신 설>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신 설>	구천면로 2 <신 설>
강서구 <신 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서사무소 <신 설>	"/ <신 설>	우장산로 117 <신 설>
중구 <신 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중부사무소 <신 설>	"/ <신 설>	창경궁로1길 14 <신 설>
동작구 <신 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보라매사무소 <신 설>	"/ <신 설>	여의대방로20길 33 <신 설>
도봉구 <신 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창동사무소 <신 설>	"/ <신 설>	노해로69길 132 <신 설>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상담 및 운영총괄	영신로 200
은평구 <신 설>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은평사무소 <신 설>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신 설>	통일로 62길 7 <신 설>
광진구 <신 설>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사무소 <신 설>	"/ <신 설>	구천면로 2 <신 설>
양천구 <신 설>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사무소 <신 설>	"/ <신 설>	남부순환로 54길 37 <신 설>
동작구 <신 설>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사무소 <신 설>	"/ <신 설>	여의대방로 20길 23-1 <신 설>
도봉구 <신 설>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사무소 <신 설>	"/ <신 설>	노해로69길 132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3의3. 기타청소년시설

현행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여의대방로20길 33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

개정안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 본 조례에서 [별표 1]은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확정하는 기능(제4조)을 가지고 있으며, [별표 1]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을 위임·위탁 및 운영비를 지원(제10조제1항)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표 1]의 현행화는 중요성과 동시에 필수적인 조치라고 보여지며,
 - 향후 변경 사항(시립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 등)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평생교육국의 주의와 개선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설치) 이 조례에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그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누락된 개정 사항 등을 수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누락된 개정 사항 반영(안 제10조제1항).
-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에 관한 현행 조례 유지(안 제11조).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5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701
----------	------------

제안연월일 : 2026년 6월 24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누락된 개정 사항 등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누락된 개정 사항 반영(안 제10조제1항).
- 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에 관한 현행 조례 유지(안 제11조).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전단 중 “청소년단체”를 “청소년단체 등”으로 한다.

안 제11조의 제목“(시설 사무편람의 제정 등)”을“(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을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

②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청소년시설의 운영”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시가 운영하거나 자치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u>청소년단체</u>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p> <p>3.·4. (생략)</p>	<p>제2조(정의)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u>청소년단체</u> ----- -----</p> <p>3.·4.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개정안과 같음)</p> <p>3.·4. (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u>청소년단체</u>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현행과 같음)</p>	<p>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 ----- <u>청소년단체</u> 등 ----- ----- -----</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1. ~ 4. (생략) ② ~ ④ (생략)</p> <p>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하여 알려야 한다.</p> <p>②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③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변경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1. ~ 4. (생략) ② ~ ④ (생략)</p> <p>제11조(시설 사무편람의 제정 등) ①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사무편람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삭제></p> <p>② ----- ----- 제1항에 따른 사무편람----- ----- -----</p>	<p>1. ~ 4.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시설 운영규정의 제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청소년단체”를 “청소년단체 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청소년단체”를 “청소년단체 등”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시설의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별지 >

[별표 1]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 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센터	"	용마산로 217
		시립망우청소년센터	"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 660-9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광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93길 47
	② 청소년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	남부순환로54길 37
	③ 유스호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 시설	(이동)	시립일사청소년상담센터(이동형, 서북)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이동)	시립일사청소년상담센터(이동형, 서남)	"	
	(이동)	시립일사청소년상담센터(이동형, 동북)	"	
	(이동)	시립일사청소년상담센터(이동형, 동남)	"	
	용산구	시립용산일사청소년상담센터(고정형)	"	만리재로 156-1
	강북구	시립강북일사청소년상담센터(고정형)	"	한천로 140길 5-26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중랑구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	송림길 156	
	은평구	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통일로 92길 37-6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가산디지털 1로 120	
		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신림로 376	
		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난곡로24가길 54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혼합형)	"	시루봉로 15길 93 외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마포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운영총괄	월드컵로 212	
	광진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광진사무소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구천면로 2	
		강서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서사무소	"	우장산로 117
	중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중부사무소	"	창경궁로1길 14	
	동작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보라매 사무소	"	여의대방로20길 33	
	도봉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창동사무소	"	노해로69길 132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상담 및 운영총괄	영신로 200	
	은평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은평사무소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통일로 62길 7	
		광진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사무소	"	구천면로 2
	양천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사무소	"	남부순환로 54길 37	
	동작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사무소	"	여의대방로 20길 23-1	
	도봉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사무소	"	노해로69길 132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조사 연구	여의대방로 20길 33	
	3의2. 기타 청소년 시설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길음로7길 2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청소년시설의 운영"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시가 운영하거나 자치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u>청소년단체</u>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p> <p>3.·4. (생략)</p> <p>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u>청소년단체</u>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청소년단체 등</u>----- -----.</p> <p>3.·4. (현행과 같음)</p> <p>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 ----- <u>청소년단체 등</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별표 1]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같은 표 제3의3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 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용마산로 217
	"	시립망우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95길 7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54	

개 정 안

[별표 1]
 (유효기간) 별표 1 제3의2호(기타 청소년시설)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제4조 관련)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기 능	위 치
1. 청소년 활동 시설	① 청소년수련관			
	중구	시립서울청소년센터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을지로11길 23
	성동구	시립성동청소년센터	"	고산자로 260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	"	구천면로 2
	동대문구	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	"	제기로33길 25
	중랑구	시립중랑청소년센터	"	용마산로 217
		시립망우청소년센터	"	송림길 156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센터	"	한천로 660-9
	강북구	시립강북청소년센터	"	4.19로 74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센터	"	노해로69길 132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센터	"	덕릉로70길 99
	은평구	시립은평청소년센터	"	백련산로4길 16
	서대문구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	연희로32길 129
	마포구	시립마포청소년센터	"	월드컵로 212
	양천구	시립목동청소년센터	"	목동서로 143
	강서구	시립화곡청소년센터	"	곰달래로57가길 26
	구로구	시립구로청소년센터	"	구로동로 141
금천구	시립금천청소년센터	"	금하로30길 54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광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93길 47
② 청소년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③ 유스호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 시설	(이동)	시립일사청소년쉼터(이동형,서북)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이동)	시립일사청소년쉼터(이동형,서남)	"	
	(이동)	시립일사청소년쉼터(이동형,동북)	"	
	(이동)	시립일사청소년쉼터(이동형,동남)	"	
	용산구	시립용산일사청소년쉼터(고정형)	"	만리재로 156-1
	강북구	시립강북일사청소년쉼터(고정형)	"	한천로 140길 5-26
	중랑구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	송림길 156
	은평구	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통일로 92길 37-6

	영등포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	문래로 110
	동작구	시립보라매청소년센터	"	여의대방로20길 33
	강남구	시립수서청소년센터	"	광평로144
	강동구	시립강동청소년센터	"	아리수로93길 47
② 청소년특화시설				
	중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 국내외 문화교류활동 지원	퇴계로26가길 6
	용산구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 영상미디어활동 지원	한강대로 255
	영등포구	시립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영신로 200
	노원구	시립노원청소년미래진로센터	청소년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	노원로 16길 16
	양천구	시립청소년음악센터	청소년 음악활동 지원	신정동 1290-6외 4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신 설>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 <신 설>	남부순환로54길 37 <신 설>
③ 유스호텔				
	중구	시립서울유스호텔	국내외 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교류지원 등	퇴계로26가길 6
	영등포구	시립하이서울유스호텔	"	영신로 200
2. 청소년 복지 시설	(이동)	시립일사청소년쉼터(이동형,서북)	가정 밖 청소년의 상담 및 보호	
	(이동)	시립일사청소년쉼터(이동형,서남)	"	
	(이동)	시립일사청소년쉼터(이동형,동북)	"	
	(이동)	시립일사청소년쉼터(이동형,동남)	"	
	용산구	시립용산일사청소년쉼터(고정형)	"	만리재로 156-1
	강북구	시립강북일사청소년쉼터(고정형)	"	한천로 140길 5-26
	중랑구	시립망우여자단기청소년쉼터	"	송림길 156
	은평구	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통일로 92길 37-6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가산디지털 1로 120
	"	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신림로 376
	"	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난곡로24가길 54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혼합형)	"	시루봉로 15길 93 외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마포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월드컵로 212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영신로 200

	금천구	시립금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	"	가산디지털 1로 120
		시립금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독산로 73길 10-16
	관악구	시립신림남자단기청소년쉼터	"	신림로 376
		시립신림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	난곡로24가길 54
	도봉구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혼합형)	"	시루봉로 15길 93 외
	중구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 및 지원시설	을지로11길 23
3. 기타 청소년 시설	마포구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상담 및 운영총괄	월드컵로 212
	광진구 〈신 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광진사무소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구천면로 2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강서구 〈신 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서사무소	"	우장산로 117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중구 〈신 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중부사무소	"	창경궁로1길 14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동작구 〈신 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보라매사무소	"	여의대방로20길 33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도봉구 〈신 설〉	시립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창동사무소	"	노해로69길 132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영등포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상담 및 운영총괄	영신로 200	

	양천구	시립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 종합서비스 지원시설(쉼터 포함)	남부순환로54길 37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조사 연구	여의대방로 20길 33
3의2. 기타 청소년 시설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길음로7길 20
3의3. 기타 청소년 시설	동작구	시립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청소년인터넷중독 예방 및 상담	여의대방로20길 33
	도봉구	시립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	노해로69길 132
	도봉구	시립창동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

	은평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은평사무소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통일로 62길 7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광진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광진사무소	"	구천면로 2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양천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드림사무소	"	남부순환로 54길 37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동작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사무소	"	여의대방로 20길 23-1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도봉구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창동사무소	"	노해로69길 132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동작구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조사 연구	여의대방로 20길 33
3의2. 기타 청소년 시설	성북구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 및 상담	길음로7길 20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